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하위법
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단체 지정절차에 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로 통·폐합 및 기능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 내지 제6조)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의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다. 해양교육센터 지정절차에 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안 제9조제4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 및 기능개편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안
제22조제1항)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법 제13조)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법 제1
4조)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인증기준 적
합여부 검토(법 제8조제2항)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
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3.1.29. ~ 24.1.0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령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지정요건이 적합지를 검토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4.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단체)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 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 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단체 중에서 ----- -----
제3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 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 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 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	<삭 제>

현행	개정안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 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 는 사람 각 1명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 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삭 제>

현행	개정안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삭 제>

현행	개정안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현행	개정안
<u>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u>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u> <u>제6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 <u>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① ~ ③ (생략)</u>	<u><삭 제></u> <u>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① ~ ③ (현행과 같</u>

현행	개정안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u>제2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u>1.·2. (생략)</u> <u><신설></u> <u><신설></u> <u>3.·4. (생략)</u> <u>② (생략)</u>	<u>음)</u>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u>제22조(업무의 위탁) ① -----</u> ----- ----- ----- ----- <u>비영리법인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양교육센터---</u> <u>1.·2. (현행과 같음)</u> <u>3.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u> <u>4.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u> <u>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26